

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약외품(보건용마스크, 손 소독제 등)의 매점매석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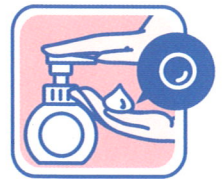


부당 가격인상, 부당 주문취소 요구, 매점매석 행위는
서울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매점매석 행위 처벌



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

소비자와 판매처



소비자는 필요한 적정량 구입, 과도한 가격인상 신고
판매처는 적정 가격 표시하여 원활한 공급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



소비자상담 및 구제
매점매석 행위

[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/ 02-2133-4891~7
서울시소비생활센터 / 02-2133-1214
- 서울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
/ 02-2133-955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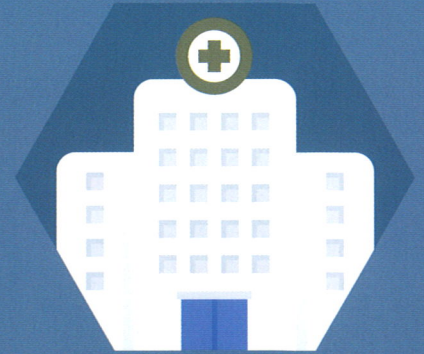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



비누를 사용해 30초 동안
충분히 손 씻기



감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 시
즉시 보건교사에게 알리기



의심 환자는 곧바로
가까운 의료기관 방문



감염 환자는 격리기간 동안
등교하지 않기



격리치료 중에는 다른사람에게
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



옷소매로 기침예절 실천하기

☎ 증상발생시 관할 보건소 연락처 (가나다순)



강남구(3423-7139)	광진구(450-1937)	동대문구(2127-5422)	성동구(2286-7040)	용산구(2199-8093)
강동구(3425-6713)	구로구(860-2560)	동작구(820-9465)	성북구(2241-6022)	은평구(351-8278~9)
강북구(901-7706)	금천구(2627-2717)	마포구(3153-9037)	송파구(2147-3478)	종로구(2148-3557)
강서구(2600-5868)	노원구(2116-4344)	서대문구(330-8726)	양천구(2620-3856)	중구(3396-6363)
관악구(879-7131)	도봉구(2091-4483)	서초구(2155-8095)	영등포구(2670-4905)	중랑구(2094-0742)